

## 1 개정개요

현 행	개 정 안
<input type="checkbox"/> 한국철도공사 부동산 및 철도 차량 지방세 감면 <input type="radio"/> 사업용 부동산 : 취득세 25%, 재산세(도시지역분 포함) 50% <input type="radio"/> 일반철도차량 : 취득세 50% ※ 고속철도 : 취득세 25% <input type="radio"/> (일몰기한) <u>2025.12.31.</u>	<input type="checkbox"/> 감면 연장 및 도시지역분 정비 <input type="radio"/> 사업용 부동산 : 취득세 25%, 재산세 50% <input type="radio"/> (현행과 같음) <input type="radio"/> (일몰기한) <u>2028.12.31.</u>

### □ 개정내용

- 교통 편의 증진 등 공익성 고려하여 감면을 3년 연장하되,  
 - 지방세 특례 원칙에 따라 목적세적 성격의 재산세 도시지역분 감면은 정비

### □ 적용요령

- 이 법 시행(2026. 1. 1.)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(부칙 §2)